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 
 편집 : 문화공보관 심계섭  
 전화 75-7834  
 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 
 전화 75-6090

제 747 호  
 1980. 1.19

# 시보

## 차례

◎ 조	례	
제 1392 호 :	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및지방소방공무원수향지급조례중개정조례.....	3
◎ 규	칙	
제 1839 호 :	서울특별시임시직의사규칙개정규칙 .....	4
◎ 고	시	
제 11 호 :	도시계획사업 ( 도로 ) 실시계획인가 .....	5
제 12 호 :	도시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지정 .....	6
제 13 호 :	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 .....	6
제 14 호 :	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및결정 .....	7
제 15 호 :	도시계획사업 ( 전기공급설비 ) 시행허가 .....	8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제 16 호 :	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지적승인.....	8
제 17 호 :	도시계획사업 (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) 결정및시설 ( 공원, 도로 ) 결정.....	9
제 18 호 :	도시계획사업 ( 공용의청사 ) 실시계획인가.....	9
제 19 호 :	도시계획시설 ( 전기공급설비 ) 결정및지적승인.....	10

◎ 공 고

제 12 호 :	도시개발사업시행인가시행기간지정에바른공민공고.....	11
제 15 호 :	도시계획사업 (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) 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.....	11
제 16 호 :	도시계획사업 ( 시장 ) 완료공고.....	12
제 17 호 :	도시계획사업 ( 시장 ) 완료공고.....	13
제 18 호 :	도시계획사업 ( 도로 ) 완료공고.....	13
제 19 호 :	망우 5 차빛김포 1 차도지구회정리사업청산금납입고지서공 시송달.....	14
제 20 호 :	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연담.....	16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
1980년 1월 19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392 호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위임한사항"을 "위임한 사항 및 임상연구비지급"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지하철본부 헌입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조정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이 하고, 의무직공무원의 조정수당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병원근무자: 월 200,000 원 (특진비준용액 180,000 원 포함)
- 2. 보건소근무자: 3월 월 200,000 원 3갑 월 225,000 원

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3 조 (임상연구비) ① 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병원의 장급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 지급액 범위내에서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임상연구보고서제출, 지급방법 등은 국립의료원의 예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별표 1 을 삭제하고, 별표 2 및 별표 3 을 "별표 1 " "별표 2 " 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1 일을 기하여 적용한다.

② (경과조치) 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중 이 조례 제 3 조에 의한 임상연구비를 지급받지 않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정수당액을 지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임시직의사 규칙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
1980년 1월 19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839호

서울특별시 임시직  
의사규칙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임시직의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잡급직의사규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2 제1항및 지방잡급직령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및 보건소의 잡급직 의사 (이하 "의사"라한다)의 급료, 조정수당, 임상연구비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의사의 종류및 고용방법)

①의사는 수련의 (인턴, 엑스턴, 및 레지던트)와 일반의사 및 전문의로 구분한다.

②과장은 시장이 임용하고, 일반의는 당해 기관장이 임용한다.

③진료분야별 과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과목 표방허가를 받은 전문의 중에서 보한다.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사한 전문의로 보할수 있다.

제3조 (의사의 충원및 사직) ①수

련의의 충원은 서울대학교 산하병원과의 계약에 의한다.

②일반의사 및 전문의의 충원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기관의 의사결원 및 결원에정인원을 추산하여 매년1회 이상 공개모집방식으로 충원 또는 임용후보자를 선정해 두어야 한다.

③전문의의 충원이 극히 어려운 특수진료과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원 충원시까지 비상근계약 의사를 활용 할 수 있다.

④일반의사 및 전문의가 사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에 당해 기관장에게 예고하여야 한다.

제4조 (급료) ①수련의의 보수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②일반의사및 전문의의 급료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3급을류및 3급잡류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액및 호봉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이 경우 공무원유사경력 (정규직의사, 잡급직의사또는 전문직의사로서의 근무경력)은 그전부를 재직기간으로 계상하며, 공무원유사경력에 해당하지않는의사 근무경력은 7할범위내에서 당해기관장이 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5조 (조정수당등) ①일반의사및 전문의의조정수당은 별표와 같이한다.

<p>② 퇴근하였던 의사가 야간응급진료에 종사한 때에는 1회 3,000 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장이 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           칙</p>
<p>제 6 조 (임상연구비) ① 병원 소속의 일 반의사 및 전문의에게는 1인당 평균 연간 1,000,000 원 한도내에서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② 임상연구보고서 제출, 임상연구비 지급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 7 조 (상벌) ① 의사의 상벌은 시</p>	<p>① (시행일) 이규칙은 공포한날이 속한월의 1일부터 적용한다. ② (경과조치) 이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 4 조에 의한 급료가 종전의 급료에 미달할 때는 그 사연인에 한하여 이종전의 급료액으로 지급한다.</p>

<별표>    조 정 수 당 지 급 액

<b>구            분</b>	<b>일   반   의</b>	<b>전   문   의</b>
갑 (법정수당준용액)	50,000	50,000
을 (특진비준용액)	150,000	200,000
계	200,000	250,000

**비 고**

1. 특수병원 (아동병원, 정신병원, 결핵병원) 의 전문의 확보상 필요 할 때에는 병원장은 조정수당(을)을 20,000 원 가산 지급할 수 있다.
2. 병원장은 조정수당(을) 대신에 국립병원의 예에 준하여 특진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
3. 이 경우 조정수당(을) 수준을 보장하고, 나아가서 진료수준의 향상 및 봉사활동의 제고를 위하여 특진비 할당액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이 조정수당(을)의 명목으로 추가지급할 수 있다.  
※ 추가지급액 = 조정수당(을) - ( 특진비 할당액 × 3/4 )

### 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1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시 고시제 416 호 (79.12.17)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

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함.

2.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.

1980.1.17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의위치 : 용산구 한강로 3가동 41 - 용산구서빙고동 84 의면지
2. 사업의종류및 명칭 : 잠수교 - 철도 방어진 도로화장공사
3. 사업규모 : 도로화장 : B= 15-30-70m L=2,740m  
하수도 : 환관 D=600-800m/m L=5,110m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 - 1980.12.31
6. 사용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생략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관계인주소, 성명 : 별첨토지조사서생략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2 호

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지정

1. 당시 도시계획 재개발사업구역중 사업계획 결정된구역 (지구) 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을 도시재개발법 제13조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.

1980. 1.

서울특별시장

가. 구역 (지구) 별 인가신청기간 지정내역

사업명칭	시행구역 (지구)	위 치	시행면적	인가신청기간	비고 (사업계획 결정)
서울역 - 서대문 제3구역 재개발사업	서울역 - 서대문 제3구역 1, 2 지구	서대문구미군동 267 일대	7,895㎡	80.1.15 - 82.1.14	진고시제 435호 (79.11.22)
공평구역 재개발사업	공평재개발구역 제1지구 - 제19지구	종로구공평동 66 일대	97,498㎡	"	진고시제 533호 (79.12.28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3 호

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미관지구를 도시계획법제12조와 건설부고시제41

호 ('77.3.16)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및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
1980.1.

서울특별시장

○ 미관지구 변경및 결정조서					
구 분	종 별	연 장	면 적	위 치	비 고
기 정	제 4 종	2,450m	58,800 m <sup>2</sup>	반포동 산 46-1-서초동 788 부력	도로 경계선부터 양측 12 m
변 경	제 3 종	2,450m	98,000 m <sup>2</sup>	" "	" 양측 20 m 공원용지구간제외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 호

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및 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관지구를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 '79.12.10 ) 에 의거 다

음과 같이 결정및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80. 1. .

서울특별시장

○ 미관지구 결정및 변경조서

구 분	종 별	연장(m)	면적 (m <sup>2</sup> )	위 치	비 고
신 설	4	2,420	72,600	대흥동-합정동 373 일대	양측 15m
"	4	2,200	60,000	우이동-상계교	"
"	4	880	26,400	도봉구 빈동 455-창동 422	"
"	4	4,000	120,000	수유동 279-미아동구계간 (삼양로)	"
"	4	500	15,000	방배동 113 부력 - 방배동 152 부력	"
기 정	4-30	1,870	20,880	문배동-마포동 (옥천북개도로)	12 m
변 경	4-30	1,870	24,060	" (옥천구간 530 위치조정)	15 m
기 정	4-55	4,100	98,400	방배동-상도동	양측 12m
변 경	4-55	1,050	104,700	방배동-상도동. 방배동 151 구획-사당동 708 (위치조정)	" 15m
기 정	2-29	2,200	726,000	서초동-영동지구 48 구획	" 12m
변 경	2-29	2,200	88,000	" (위치조정)	" 20m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5 호

도시계획사업 ( 전기공급설비 )  
시 행 허 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75 호 ( 79.11.17 ) 로 시설결정및 지적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 79.12.10 )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0. 1.21

서울특별시장

- 1)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5의 26 외 1 필지
- 2) 사업의 종류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 ( 전기공급설비: 변전소 )
- 3) 면적및 규모: 면적 5,127㎡ ( 1,550.9 평 )

○ 노선조사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2		8 m	130 m	미아동 867	미아동 833	
변경	"	1		10 m	"	"	"	

별첨도면표시 외간음 ( 도면생략 )

- 4) 시행자주소, 성명: 영등포구 여의도동 1-791 한국전력주식회사사장 김영준
- 5)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  
착수년월일: 80. 3  
준공예정일: 80.11
- 6) 위치도면, 설계도서: 별첨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 호

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84 호 ( 79.5.4 ) 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 79.12.10 )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1.21

서울특별시장

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7호

도시계획사업 ( 일단의주택지 조성 사업 ) 결정및시설 ( 공원, 도로 ) 결정

(79.12.10) 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.  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) 및 시설 ( 공원, 도로 )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건설부 고시제 463호

1980. 1.22.

서울특별시장

가.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조서

구분	사업 ( 시설 ) 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일반의 주택지 조성사업	마포구성산동산 11-47 일대	3,478.8평	
"	도로	마포구성산동산 11-47 부근	920.7평	단지내 6-8m
"	어린이공원	마포구성산동산 11-47 일대	169.6평	단지내

별첨도면표시와같음 ( 도면생략 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8호

도시계획사업 ( 공용의청사 ) 실시계획인가

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,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 ( 79.12.10 ) 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38 호 ( 79.10.15 ) 로 시설결정및 지적승인 되었으며 동공고 제 382 호 ( 79.11.14 ) 로 도시계획사업 ( 공유의청사 ) 에 따른 서류공람및 의견청취한 토지제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의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1.20

서울특별시장

- 1) 사업시행지 : 성동구중곡동 171-1
- 2) 사업의종류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공용의청사)
- 3) 사업시행면적 : 129 평
- 4) 사업시행지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
- 5)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
  - 가. 착수년월일 : 인가일로부터 일주일내
  - 나. 준공예정년월일 : 1980. 2.28
- 6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  - 가. 소재지 : 성동구중곡동 171-1
  - 나. 지목, 지적 : 대지 129평
  - 다.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: 없음
- 7)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

생략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9 호

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결정 및 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,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1.22.
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전기공급설비	영등포구 구로동 125-66 부근	1,420 m <sup>2</sup> ( 429.55 평 )	지하철 신도림변전소
신설	"	관악구 방배동 505-2 부근	3,895 m <sup>2</sup> ( 1,205 평 )	지하철 사당변전소

발급도면표시와같음 (도면생략)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2호

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시행기간  
지정에따른공람공고

1. 당시 도시계획 재개발사업구역중  
사업계획 결정된구역 (지구) 에 대

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기  
간을 지정하였기 도시재개발시행  
령 제19조제 2항의 규정에 의거  
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 
소유자는 동기간내에 신청요건을  
갖추어 인가신청을 하여주시기 바  
라며, 동기간내에 인가신청이 없을  
시는 토지등의 소유자이외의 시행  
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수 있다.

가. 구역 (지구) 별 인가신청기간 지정내역

사업명칭	시행구역 (지구)	위 치	시행면적	인가신청 기 간	비고 ( 사업 계획 결정
서울역-서 대문제 3구 역재개발사업	서울역-서대문 제 3 구역 1, 2 지구	서대문구마곡 동 267 일대	7,895 ㎡	80.1.15- 82.1.14	전고시제 435 호 (79.11.22)
공평구역재 개발사업	공평재개발구역 제 1 지구 - 제 19 지구	종로구공평 동 66 일대	97,498 ㎡	"	전고시제 533 호 (79.12.28)

2. 관계 도서는 당시 건축국 재개발  
1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

공람하고 있습니다.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5 호

도시계획 사업 ( 일단의주택지조  
성사업 ) 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70 호 (79.6.  
25) 및 동고시제 387호로 도시계획  
사업 실시계획인가된 구기동 도로및  
의 교관공관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 
서울특별시고시제 437 호 (79.10.15)

에 의한 사업실시계획변경사유가 발  
생하였기 본사업계획을 변경요자 도  
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제 34조의  
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
일반에게 공람요자 공고함.

2. 변경으로인한 수용대상재산의 소유자  
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 
미수령자에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함.

1980. 1. 18

서울특별시장

<p>○ 사업계획서</p> <p>1. 사업명 : 도시계획사업 ( 구기동 외교관단지 조성사업 )</p> <p>2. 사업시행지위치 : 구기동 158 번 지일대</p> <p>3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</p> <p>4. 사업시행기간 : 79.4-80.2.29</p> <p>5. 공고기간 : 80.1.18-80.1.31</p>	<p>6. 재원조서 : 공익사업비, 도시계획 종합계획, 시 설비</p> <p>7. 사업규모 : 면적 : 12,605 평 사업비 : 1,685,058 천원</p> <p>8. 사용 또는 수용할재 산의 소재지 : 별첨</p> <p>9. 토지 또는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</p>
---	---

건 설 조 서

순번	소 재 지		구 조	평 수	등급	소 유 자		비 고
	동	지 번				주 소	성 명	
1	구기동	126-3	철근콘크리트 평 옥 개	7.56평 26.19"		구기동 126-3	최 광 복	
2	"	126-5	연외조세멘외층	12.91"		구기동 126-5	이 종 성	
3	"	126-19	연외조세멘외층 지하 4.23"	23.10"		" 126-19	강 승 만	

토 지 조 서

순번	소 재 지		지 목	평 수	등급	소 유 자		비 고
	동	지 번				주 소	성 명	
1	구기동	126-22	재	175㎡		구기동 126-5	이 종 성	
2	"	126-19	"	202㎡		" 126-19	강 승 만	
3	"	126-3	"	188"		" 126-3	최 광 복	
4	"	125-1	"	50"		창천동 72-37	고 윤 석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6 호

도시계획사업(시장)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72 호(78.9.13) 로 지적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3 호(79.6.20) 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(시장)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및 동법 제 57 조 2

항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63 호(79.12.10)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한다  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, 시민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1.19.

서울특별시 시장

도시계획사업(시장) 완료내역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5-1외 2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성 내 시 장
3. 사업시행면적 : 2,367㎡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천호개발(주) 대표 오 병 희
5. 사업시행기간 : 79.6.20-79.12.31
6. 준공도면 : 생략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7 호

도시계획사업(시장)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8 호 (79.5.26) 로 지적공시 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3 호 (79.6.20) 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(시장) 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35 조 및 동법 제 57 조 2 항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, 시민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1. 19.
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사업(시장) 완료내역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오금동 397-2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석 우 시 장
3. 사업시행면적 : 2,268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4-24 석우상사대표강영숙
5. 사업시행기간 : 79.6.20-79.12.31
6. 준공도면 : 생략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8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24 호 (79.12.20) 로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허가된 도봉구 수유동 326-4 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항 및 제 85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1. 21.

서울특별시장

다 음	<p>1. 사업시행지 -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326-4</p> <p>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-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시설행</p> <p>3. 사업규모 및 면적 - 폭 6 m, 연장 33 m, 총면적 328 ㎡</p> <p>4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-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326-2 이석중</p> <p>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가. 착수년월일 - 1979.12.24. 나. 준공년월일 - 1980. 1.15</p> <p>6. 준공도면 - 생략</p>	<p>◎서울 특별 시공고제 19 호</p> <p>망우 5차 및 김포 1차 토지구획정리 사업 청산금납입 고지서공시송달</p> <p>1979.12.10자로 납입고지한 망우 5차 및 김포 1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청산금 납입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 게 송달한바 있으나 수령인의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므로 지방세법 제 5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0. 1.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 특별 시 장</p>
--------	---	---

( 망우분 )

공시 송달대 상자 명 단

( 도봉구청 )

수 납 번호	할 진		지 평수	과도평	청 산 금 체 납 액	납 부 자		비 고
	동	지 번				주 소	성 명	
5	공농	312-9			195,465	공농동 518-5	최인철	
19	"	323-22			262,490	경기도파주군 문산읍문산리 61-7	김운택	
85	"	382-19			336,646	연희동 115-22	홍동진	
108	"	389-2			1,374,790	동선동 3가 183	정옥임	
109	"	389-10			16,005	공농동 산 77	박춘영	
131	"	395-2			142,901	면목 101-31	이해수	
263	"	509-5			331,535	공농동 383-1		
331	"	517-35			370,566	이태원동 63	김수복	
408	"	566-26			87,936			
526	"	586-1			539,148	공농동 353-3	김관수	외16인

수납 번호	물 건 지			과도평	청 산 금 채 납 액	남 부 자		비고
	동	지 번	평 수			주 소	성 명	
714	공농	644-7			167,396	창선동 338-50	길인순	
719	"	644-28			527,408	공농동 340-10	이계석	외1인
816	"	684-46			984,247		정명근	
820	"	690-2			221,178	양주군구리읍갈매리	109-28	한순
821	"	690-4			280,158	"	"	"
822	"	690-5			412,865	"	"	한선
338	"	517-48			2,128,755	면목동 72	이금봉	
541	"	587-6	102.8	29.6	3,906,548	금호동 2가 168-12	송문호	
209	"	502-1	27.2	8.8	1,406,204	이문동산 63-4	김광남	
693	"	621-8	104.8	2.4	456,847	신당동 304-27	임세영	
4	"	312-7	128.8	3.4	499,684	북동 122-6	정선희	
110	"	389-12	83.2	25.6	4,097,510	상왕십리 469	김석문	
414	"	566-32	60.8	8.7	1,621,088	중화동 301-5	정덕화	
764	"	661-22	69.7	0.5	95,703	화곡동 70-1	김동원	
646	"	609-3	316.4	0.4	63,988		이흥철	
72	"	380-38	112.6	4.9	560,295	북동 323-24	김재영	
74	"	380-44	30.5	0.5	75,670	북동 323-4	"	
786	"	683-7	35.2	0.1	20,207	석관동 220	김덕행	
656	"	609-19	45.4	2.9	464,481	"	"	

( 김포분 )

( 강서구청 )

105	등촌	504-1			111,055	등촌동 365-76	박가수	
126	"	605-1			43,602	신수동 68-26	김광자	
135	"	534-4			201,367	북동 40	이재현	
158	화곡	993-4			1,232,964	신당동 305-26	김원항	
217	"	988-18			37,798	화곡동 361-1	이원기	
218	"	988-19			12,599	화곡동 361-1	이원기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0호

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열람

1. 서울특별시 관내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,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 17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) 154 반포변전소 부지

가. 사업의 명칭: 전원개발사업

나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: 중구

남대문로 2가 5

한국전력주식회사 김영준

다. 사업구역 위치: 강남구 신사동 399-1 일원

면적: 3,467.1 ㎡

(1,048.8 평)

2) 154 압구정변전소 부지

가. 사업의 명칭: 전원개발사업

나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: 중구 남대문로 2가 5

한국전력주식회사 김영준

다. 사업구역 위치: 강남구 논현동 산 53-1

면적: 4,38.0 ㎡ (1,325평)

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끝.